

의안번호	2216502
의 퇴 인	임미애의원
회 답 일	2026.2.25.
추계번호	26D0514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억 5,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49억 1,600만원(연평균 49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69	140	142	144	146	641	128
정책지원관 증원	2,500	4,641	4,755	4,873	4,994	21,763	4,353
부교육감 증원	249	471	481	494	506	2,201	440
각종 계획 수립	228	—	—	—	—	228	46
각종 위원회 설치	11	18	18	18	18	83	17
합 계	3,057	5,270	5,396	5,529	5,664	24,916	4,983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 ~안 제11조(광역생활권 지정 등)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변경 시 광역생활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시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4조(대구 경북특별시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특별시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0조~안 제21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종전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6조(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0조(특별시의회 선거제도 개혁위원회)	-특별시의회의장은 특별시의회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32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함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7	안 제34조(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대구경북특별시소방본부를 두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36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5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51조(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66조(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보완하고 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광역통합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의무규정
12	안 제68조(통합교육교부금의 신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증가를 보완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정착·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69조 ~안 제71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4	안 제79조(교육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특별시 부교육감의 수를 3명으로 하고, 부교육감 1명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다른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함	의무규정
15	안 제82조(종합계획의 수립)	-특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84조(대구 경북특별시 종합계획심의회)	-특별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종합계획심의회를 둠	의무규정
17	안 제88조(인·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제정안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	의무규정
18	안 제89조 ~안 제95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	-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특별시장은 제정안 제8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97조, ~안 제98조(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등)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선진화·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국가는 글로벌미래특구계획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99조 ~안 제100조(과학기술의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내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102조 ~안 제111조(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야 함 -국가는 국립인공지능융합연구소를 특별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범지구 내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산업기술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2	안 제114조 ~안 제128조(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는 특별시의 글로벌 미래신산업 중심지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등과 관련한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특별시 내 첨단 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규제·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와 특별시장은 항공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특별시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 및 특별시장은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등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138조 ~안 제15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관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을 감면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 이하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특별시장 등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155조~ 안 제161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함)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하 “농어촌학교”라 함)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특별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170조 ~안 제191조(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등)	-국가는 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공연·관광 축제 등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역사문화 벨트 조성, 글로벌 문화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특별시장은 향토문화관광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향토문화관광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전담기관과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173조(문화예술의 진흥)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7	안 제220조 ~안 제 232조 (대도시권 광역 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은 설계비·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함 -국가는 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해 버스·광역 철도·도시철도 등의 적자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함 -국가는 특별시 관할구역 내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235조 ~안 제250조(탄 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등)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는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철강산업 전환 특별지 구, 산지형 태양광 지구 및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소 생산·저장·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특별시장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특별시장은 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특별시에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육성, 관련 산 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탄 소중립 전력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구의 기반조성,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247조(수 소 기반 에너지 도서)	특별시장은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0	안 제279조(수 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	-특별시장은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 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281조(보 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보존자원 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285조(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종전의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학 연합캠퍼스를 조성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별시장이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3	안 제286조(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4	안 제289조(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별대책지구의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5	안 제29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특별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6	안 제298조(특별시융합돌봄특구 지정)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위한 특별시 융합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301조(청년지원정책 재정 지원)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306조(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종전의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하고, 의과학자 및 의사공학자 양성을 위해 국립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국가는 국립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9	안 제308조, 안 제310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특별시장은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함	의무규정
40	안 제311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국가는 특별시에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 ~안 제11조(광역생활권 지정 등)	×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14조(대구경북 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3	안 제20조~안 제21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양사무의 범위,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26조(특별시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5	안 제30조(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	○	
6	안 제32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미대상: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부시장, 부지사 수는 각 2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34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36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45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51조(국가의 재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66조(광역통합교부금 신설)	—	미대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통합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안 제68조(통합교육 교부금의 신설)	—	미대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통합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3	안 제69조 ~안 제71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79조(교육자치 조직권에 관한 특례)	0	
15	안 제82조(종합계획의 수립)	0	
16	안 제84조(대구경북 특별시 종합계획심의회)	0	
17	안 제88조(인·허가 등의 의제)	×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18	안 제89조 ~안 제95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 등)	×	-일괄처리기구 구성·운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조세 감면 또는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개발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97조, ~안 제98조(글로벌 미래특구의 지정 절차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제99조 ~안 제100조(과학기술의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0	
21	안 제102조 ~안 제111조(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등)	×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되는 기술단지 규모와 구성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2	안 제114조 ~안 제128조(미래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3	안 제138조 ~안 제15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4	안 제155조~ 안 제161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5	안 제170조 ~안 제191조(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6	안 제173조(문화예술의 진흥)	0	
27	안 제220조 ~안 제 232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 사업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8	안 제235조 ~안 제250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정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9	안 제247조(수소 기반 에너지 도서)	0	
30	안 제279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어업인을 추정하기 곤란함
31	안 제28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2	안 제285조(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	×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286조(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책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4	안 제289조(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경제·관광진흥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5	안 제29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6	안 제298조(특별시 융합돌봄특구 지정)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7	안 제301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8	안 제306조(지역거점국립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	설치되는 국립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규모, 이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9	안 제308조, 안 제310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40	안 제311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4조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은 각각 2회 개최를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¹⁾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임

1)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 안 제26조에 따른 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²⁾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른 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 대구광역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정수를 합한 수로 함
-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면,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은 총 47명임

[표 2] 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	현행 정책지원관 정수	증원 가능 정책지원관 수
대구광역시의회	33	16	17
경상북도의회	60	30	30
계	93	46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³⁾의 평균인 72,157천원을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9에 따라 특별시 부교육감은 총 3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제하고(현행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각 1명), 부교육감 1명에게 지원인력 3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 소요를 산정함
 -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1명의 부교육감에게 비서 및 운전 업무 등을 위하여 담당 직원 3명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부교육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계는 현행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의 인건비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증원되는 부교육감의 업무공간은 기존 교육청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2조에 따른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안 제99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 기본계획, 안 제173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안 제247조에 따른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추계에 활용한 2024년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제정안의 각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30조에 따른 특별시의회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안 제84조에 따른 대구경북특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함)의 경우 회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선거제도개혁위원회는 연간 4회, 종합계획심의회의는 연간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선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은 15명이며,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15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2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2명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⁴⁾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4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평균 운영예산(1억 275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안 제14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년까지 총 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0	20	20	20	20	90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8	15	15	15	15	68
실무지원단 운영비	51	105	107	109	111	483
합 계	69	140	142	144	146	641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26조)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6년 연봉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한 연간 평균연봉은 7,216만원임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47인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억 9,6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60억 9,8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4]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72	47	3,392	1,696	3,473	3,557	3,642	3,730	16,098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2,200만원 등 5년간 21억 3,000만원으로 예상됨

[표 5]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222	456	469	484	499	2,1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⁵⁾)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4,800만원 등 5년간 33억 1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348	712	729	747	765	3,3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234	-	-	-	-	2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억원 등 5년간 217억 6,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696	3,473	3,557	3,642	3,730	16,098
기관부담금	222	456	469	484	499	2,130
기본경비	348	712	729	747	765	3,301
자산취득비	234	-	-	-	-	234
합 계	2,500	4,641	4,755	4,873	4,994	21,7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특별시의 부교육감 증원(안 제79조)

- (보수) 교육감 1명 및 지원인력 3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6억 3,2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원인력 3명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6급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각각의 보수 수준은 2026년 교육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을 참고하여 산출
 -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9]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부교육감 (고위 공무원단)	152	1	152	76	156	159	163	167	721
지원인력 (6급 기준)	64	3	192	96	197	201	206	211	911
합계			344	172	353	360	369	378	1,63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00만원 등 5년간 2억 1,5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0]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22	46	47	49	51	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⁶⁾)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00만원 등 5년간 3억 3,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1]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35	72	74	76	77	3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교육감 증원은 2026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교육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992만원으로 예상됨

[표 12]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20	-	-	-	-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부교육감 1명, 지원인력 3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900만원 등 5년간 22억 100만원이 발생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부교육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72	353	360	369	378	1,632
기관부담금	22	46	47	49	51	215
기본경비	35	72	74	76	77	334
자산취득비	20	-	-	-	-	20
합 계	249	471	481	494	506	2,2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각종 계획 수립(안 제82조, 안 제99조, 안 제173조 및 안 제247조)

□ 안 제82조에 따른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안 제99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 기본계획, 안 제173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및 안 제247조에 따른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의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⁷⁾

○ 추계의 전제에 따라 4개 계획 모두 2026년 첫해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 및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 4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7)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에 대한 비용추계서 상 계획 수립 비용

[표 14]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특별시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57	-	-	-	-	57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57	-	-	-	-	57
문화예술진흥계획	57	-	-	-	-	57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기본계획	57	-	-	-	-	57
합 계	228	-	-	-	-	2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선거제도개혁위원회 및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안 제30조, 안 제84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선거제도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15명, 종합계획심의회 민간위원 수는 12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선거제도개혁위원회는 연간 4회(2026년은 2회), 종합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선거제도개혁위원회 및 종합계획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00만원 등 5년간 총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선거제도개혁위원회 (15인×연 4회)	30	60	60	60	60	270
	종합계획심의회 (12인×연 1회)	12	12	12	12	12	60
	소계(a)	42	72	72	72	72	330
회의참석수당(b)		0.25	0.25	0.25	0.25	0.25	0.25
계(a×b)		11	18	18	18	18	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억 5,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49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69	140	142	144	146	641
정책지원관 증원	2,500	4,641	4,755	4,873	4,994	21,763
부교육감 증원	249	471	481	494	506	2,201
각종 계획 수립	228	—	—	—	—	228
각종 위원회 설치	11	18	18	18	18	83
합 계	3,057	5,270	5,396	5,529	5,664	24,9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부유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